

4. 住宅建設工事監理費支給基準中 改正基準

建設交通部告示 第1995-90號 1995. 3. 18

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감리 대가등) ①감리자의 감리업무
에 대한 감리비용(이하 “감리대가”라
한다)은 총공사비(주택단지내에 건설하
는 주택과 부대·복리시설 등에 대하여
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금
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다음표
에서 정하는 해당 인·월수에 기준금액
과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총공사비(원)	20억이하	30억	50억	100억	200억
감리인·월	10.03	14.50	23.73	46.21	89.59
총공사비(원)	20억이하	30억	50억	100억	200억
총공사비(원)	300억	500억	1,000억	2,000억	3,000억이상

* 주)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직선보간으로 한다.

※감리대가 산출방법

감리 대가=총공사비에 따른 공사감리
인·월수×기준금액×승수($1.0548 \times 2.$
63)

-기준금액 :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
한 중급감리원 1인 직접인건비(63,
339원)×25일
-승수(1.0548) : 중급감리원의 직접
이건비 기준에 따른 환산비 평균치
(2.63) : 직접인건비에 대한 1.1배의
간접비와 직접인건비 및 간접비의
0.25배의 보상비를 적용한 수치

②감리자는 감리원별 현장 상주기간에
별표의 감리원등급별환산비를 곱하여
산출한 인·월수의 합계를 제1항의 총
공사비에 의한 감리인·월수이상이 되
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별 현장상
주기간은 당해 공종의 공사기간이상으
로 하여야 한다.

[별표]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[별표] 감리원등급별환산비

등 급	환 산 비
특 급 감 리 원	1.699
고 급 감 리 원	1.238
중 급 감 리 원	1
초 급 감 리 원	0.692
보 조 감 리 원	0.645

- ①이 감리비 지급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이 기준은 시행일이후 착공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.

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